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 2015서경0912, 0913, 0914

사건명 : 씨제이씨지브이(주), 롯데쇼핑(주), 메가박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씨제이씨지브이(주), 롯데쇼핑(주), 메가박스(주)

1. 귀 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위 사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들이 영화관 내부 매점에서 팝콘, 콜라 등의 식·음료를 비싸게 팔고 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8년 우리 위원회의 영화관 환경 개선 이후 영화 상영관 내부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고, 신고 내용 상으로도 내부 매점 식·음료의 가격 비교 대상이 영화관 외부 상품으로 확대되는 등 영화관 내부 매점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관 내·외부 식·음료 시장에서 피조사인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곤란한 점

3. 피조사인들이 3D 안경을 끼워 팔고 있으며 3D 안경을 소지한 관객을 위한 별도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D 안경 없이 3D 영상 감상이 불가능한 본 건의 경우처럼 주된 상품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 사업자가 배제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3D 영화용 안경과 가정용 3D TV 안경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영화 상영 품질 관리 상 적합한 안경을 배부할 필요가 있는 점, 별도 요금제 도입 시 소지한 안경으로 영화 관람이 불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반면 3D 영화와 2D 영화의 가격 차이는 3D 안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안경 비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 낮아 할인이 실시되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피조사인들이 영화 시작 전 상업 광고를 상영하여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광고 상영 사실이 영화 티켓,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점, 경쟁 사업자나 다른 시장 사업자의 통상적 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점, 해외의 경우에도 영화 시작 전 상업 광고를 상영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 영화 시작 후의 입장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점

5. 일부 피조사인이 회원이 적립한 멤버십 포인트를 주중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부당하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점, 고객의 사용 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는 고객유치·판촉 등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서의 성격도 있어 화폐처럼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주말 이용이 금지되더라도 별도 비용 없이 주중 영화 관람을 가능하게 하는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6. 관련 위법성 성립요건 등을 고려할 때, 원하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본 민원 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참여연대 귀하, 청년유니온 귀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귀하

행정사무관 김하리      경쟁과 과장 이동원      전결 2016. 12. 5.

협조자

시행 경쟁과-2982      (2016. 12. 5.)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201 / <http://www.ftc.go.kr>

전화번호 02-2110-6117      팩스번호 02-2110-0652      / [meilleure1@korea.kr](mailto:meilleure1@korea.kr)      / 비공개(7)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으로 열어갑니다.